

#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시행 내규

**제1조(목적)** 본 내규는 본 대학원 학위수여규칙 제2장 및 제3장에 의거하여 대학원의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과 관련된 세부 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응시자격)**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응시 자격은 다음과 같다.

- ① 외국어시험 :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 1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재학생
- ② 종합시험 : 석사과정 12학점 이상, 박사과정 24학점 이상(신학[Ph. D.]전공은 12학점), 통합과정 36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그 평균성적이 B 이상인 자. 다만, 기독교전문대학원은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응시자격이 주어진다.

**제3조(외국어시험의 대체·면제)** ① 해당 대학원에서 개설한 외국어 관련 과목을 이수한 자나 공인된 외국어시험 점수가 본 대학원이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인 자에게는 대학원장이 외국어시험을 대체할 수 있다.  
② 특수대학원은 교육특성에 따라 외국어시험을 대체 또는 면제할 수 있다.

**제4조(종합시험의 대체)** 신학대학원은 매 학기 시행되는 성경고사로 종합시험을 대체한다.

**제5조(응시 절차)**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응시원서와 함께 응시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.

**제6조(시험일자)** 매 학기 중에 시행하되 시험실시 2주일 전에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해당 대학원의 형편에 의해 시험 공고일을 조정할 수도 있다.

**제7조(시험과목)** 본 대학원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다.

- ① 외국어시험 : 외국어시험의 과목은 영어로 한다. 다만,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 외국어 과목을 배정할 수도 있다.
- ② 종합시험 : 종합시험의 과목은 석사 2과목, 박사 3과목(Th. D. in Min. 2과목), 통합과정 3과목 이상으로 하며, 공통과목 1과목을 추가할 수 있다. 다만, 대학원장의 요구에 의해 과목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.

**제8조(출제위원)**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출제위원은 해당 대학원장이 임명한다.

**제9조(출제범위)**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의 출제범위는 다음과 같다.

- ① 외국어시험 : 각 전공 분야의 적절한 연구 수행에 대한 일반적인 수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.
- ② 종합시험 : 전공영역과 연구방법에 대한 기본지식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.

**제10조(채점위원)** 채점위원은 그 해당 과목의 출제위원이 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대학원장의 허락을 얻어 위원을 변경할 수도 있다.

- 제11조(배점 및 합격기준)** ① 외국어시험은 100점 만점으로 하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.
- ② 종합시험은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하며 과목별 합격을 인정한다.

**제12조(결과보고)**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의 채점위원은 그 결과를 시험시행일 후, 2주일 이내에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13조(재시험)**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재응시 할 수 있다.

## 부칙

1. 본 내규는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본 내규는 2009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.
3. 본 내규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4. 본 내규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